

## Q & A

「Q & A」란은 우리 협회 교육부 문의사항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질의(Q)·회시(A) 형식으로 노동부와 우리 협회 박필수 고문, 홍종민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 연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상의 조치의무

#### 【관련조항】 제23조(안전상의 조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상 책임의 주체는 하수급인이 되는가

Q

-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책임의 주체가 하수급인이 되고 원도급자는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A

-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 주체는 하수급인의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재해발생경위, 원인 등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 68307-77, '95. 2. 15)

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Q

- 일용직 전공인 재해자가 농사용 전기 인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매설한 길이 10m의 콘크리트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중, 전주매설 주위의 토사가 유실되고 전주지지 와이어로프의 결속상태가 불량하여 전주가 전도되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규칙 제8조의2, 제452조의2 조항에 규정된 구조물, 건축물의 범주에 동 재해발생 전주를 포함시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규정을 적용한다면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자 소속 회사)인지 여부

A

- 피재자인 전공이 올라가 작업을 한 "콘크리트 전주"는 구조물이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작업구조의 특성상 작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바,
- 위 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같은 경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에 있어서는 "기매설된 전주"를 동

규칙 제452조의2에서 규정한 시공시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동 규칙 제452조의3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며

- 한편,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자 소속회사)인지 여부”는 그 사업형태(발주 또는 도급공사 등)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라 산안법 제관련조항을 적용시켜야 할 것임

(건안 68301-242, '94. 9. 29)

### 안전보건시설물은 도급인이 하여야 하는지, 수급인이 하여야 하는지

Q

- 폐사는 ○○건설(주)로부터 건설공사의 기계설비공사(공사비 : ₩326,000,000)를 하도급함에 있어서 위 공사시행중 근로자가 가로 6m, 세로 12m 크기의 지하 1층 작업홀통(고층건물 또는 지하 수개층의 건축물을 지을 때 자재, 공구 등을 윗층 또는 아랫층으로 반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남겨놓은 일정크기의 자재 반입구를 말하며 공사가 끝날 무렵 이 부분을 메우게 됨)에서 3m아래 지하2층으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본 작업홀통을 시공회사가 현장전체 각 작업공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설하였으며 이는 시공회사나 현장내의 모든 하도급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구부이므로 작업근로자의 추락,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가 안전표지판, 낙상방책 시설물 설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에 의거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바 당해 현장의 안전보호시설물 설치는 시공회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한개의 공종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하도급업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인지

A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유해·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 귀사와 같이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하는 바,
- 이때에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각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 한편, 이같은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인(시공자) 및 수급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책 안전보호시설물 설치” 등의 의무는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건안 68307-191, '94. 7. 28)

## Q & A

### 낙하물방지망 설치 방법

Q

- 낙하물방지망을 지상에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 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A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 낙하물방지망의 용도는 상층부 건설작업중 자재 또는 공구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에도 직접 지상으로의 추락을 예방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 지상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인 근로자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이내(3~4m)에 1단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 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 하는 것은 불가함

(산안 32169-162, '92. 3. 17)

-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오니 귀부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 –

- 1)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가 주간사회사의 대표 및 현장 책임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여타 구성회사는 재해발생시에도 안전관리상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 2) 산재보험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 사업개시 신고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도 여러 구성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A

- 귀문 1)에 대하여

- 주간사회사의 현장책임자(소장 등)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

- 귀문 2)에 대하여

- 재해발생시 안전관리 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 68307-117, '95. 3. 8)

공동도급공사는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